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한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지어로 시키어의 지난테이어 ① 이자 · 할인료 · 보증료 ·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 계산방법 · 지 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 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할 때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3.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 · 인하는 건전한 금융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경우에는 기관이 그 기관이 되었다.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은행은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시용상태의 현저하 병두이 인라고 이저되는 경은 하리지

는 는 기를 다르고 내기고 되기도 등로 파고를 쓰게 되기는 중 이 는 중단 그 경 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 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기 차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은행의 재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2. 담모녹색달러 소사 또는 구급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 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 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 이자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 가기 보기 기 기인 및 1992의 담귀 네에서 약성급다도, 1년을 30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제\*자자는 '금융소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 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위 4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의 해지

제국소국이 지급/계국국 에시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4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 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 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 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
  - 들 '장글이어' [/시급도증기대에 났어지의 사전도 장제구제구작가 돈을 대한 묘어로 사람 (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모든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 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 는 때, 다만, 답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생실합니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회생·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2.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해당채무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제3조 제5항에 의한 경우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하여 지체한 때
- 이어 시세인 때 ③ <u>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u>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결하여 없앰,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신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u>상실하여, 곧 이를</u> 갚
  - 선언이 시되는 에게 되는 다음에 배면 그는 내가 되고 있는 그 등을 하는 이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

- 는 항에 대한 무 개의 제무 중 아무너도 기단에 단체하지 아니하기 제2항 모든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제2호 제2호 제소기계요 기기 이러되고 이거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제10 조세계요 전략 산경우 이번된 전 기계한 계속 기계요 기기 이러되고 이거되지
- 4.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4. 세5소, 세19소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곡거래 유시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 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 · 대지급채무자가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4. <u>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짜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해당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5. 제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토리하여야 합니다. 타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값이야 할 의무를 집니다.</u>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 위 7소의 발출 전 무단은 \*중정거대위현의의 표단약판과 중이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 · 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 제3호 ·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

신한은행은 친환경용지를 사용합니다.



리는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7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 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은행은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 8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9조 채무조정요청

제3도 제구도입요점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제무자는 약정한 산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제11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의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 보증인 · 답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 · 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은행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을 가입할 때 은행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 제13조 어음의 제시 · 교부

- 제 13소 어음의 세시 · 교무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가지 되었다.
- 이어, 어디어 그는 교무를 하게 많아고 되기, 이 3가 다 처음이 처리고 제13의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
- 정되는 때 ③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 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4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일부변제 · 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
- 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 는 모든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에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중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부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제12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

- 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번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모든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도장을 찍은 모양·서명을, 채무자가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신고사항의 변경

# 제16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10도 근로가용되는 자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인감 ·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니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 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신고사항의 변경)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회부와 조사

# 제19조 회보와 조사

- 제 19소 외보와 소시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 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하
- 여야 합니다.

### 제20조 이행장소 · 준거법

- 지문으로 작당하고 · **군기급**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관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 제21조 약관 · 부속약관 변경

- 제21소 약관·무속약관 면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등의 시행일 직전 1개월간 그 내용을 회수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1.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2. 약관등의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2. 병관등의 개정이 제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 2. 약관등의 개정이 재무사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은행은 약관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된 약관등의 시행
  일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에
  게 그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전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채
  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느 그러하지 아니하니다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는 그러하시 아니압니나.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합니다.

# 제22조 관할법원의 합의

제22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 변제 의 의무가 있는 사람)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변경된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치를 거쳐 제공됩니다.